

21. 올해 이렇게 달라진다.

건설 · 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축소=토지거래허가구역을 1월중 전국토의 31.9%에서 5%이하로 대폭 축소. 토지거래사후신고 수리기간도 현행15일에서 10일로 단축.

△공공건축물 표준화 설계=건교부가 9월 공동주택 표준화설계기준을 마련해 공동주택의 표준화 설계를 시행해오고 있으나 9월1일부터는 학교,우체국,경찰서,파출소, 동사무소, 구청등의 공공건축물 표준화설계 기준을 마련해서 적용·시행하게 된다. 또한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5백m²이상인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육조 등 50여종의 표준화 자재를 써야 한다.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방식 개선=사전자격심사 대상용역이 상향조정돼 지금까지 용역비 1억5천만~3억원미만인 실시설계에 대해서만 사전자격심사방식(PQ)으로 용역업자를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1억5천만~10억원미만의 실시설계는 5~7인의 자격자를 선정해서 입찰을 실시한다. 따라서 기술제안서 제출대상 용역도 5억원이상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10억원이상 실시설계로 상향조정된다.

△설계·감리 손해배상보증제도 시행=올7월부터는 설계나 감리업무 수행시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할 경우 배상해야 하고 이를 보증하기 위해 보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보증서는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한 기관 등에서 발급 받아 계약체결시까지 제출하고 보증기간은 설계용역의 경우 착공시부터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다. 설계나 감리용역 모두 용역계약금에 대한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표준건축비 인상=표준건축비가 평균 4.5%인상된다. 따라서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중 15층이하 표준건축의 경우 평당 1백75만5천원에서 1백83만원으로, 16층이상은 평당 1백95만원에서 2백4만원으로 오른다. 25.7평초과 아파트중 15층이하는 평당 1백83만원에서 1백

91만원으로 표준건축비가 각각 인상되다.

△**도시공원 건축물 증축규제 완화** = 도시공원내 기존 건축물의 증축을 종교시설에 대해서만 허용했으나 올해부터 보육시설의 증축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도시공원내 나대지에 공원조성 전까지 한시적으로 노외 주차장의 설치도 가능해진다. 또 도로변이나 철도변 시설녹지에 도로나 철도공사에 필요한 점용허가 시설물의 한시적인 설치가 가능해진다.

△**안전진단전문기관 보유장비 변경** = 지금까지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지정분야와 관계없이 20종의 진단장비를 보유해야 했으나 오는 7월부터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기본적인 장비 12종을 보유하고 건축, 교량, 터널, 수리, 항만등 지정분야별로 필요한 장비만 추가해 갖추면 된다.

△**감리제도 개선** = 감리원 등급에 검측감리원제도가 도입되며 사전자격심사대상 감리용역의 경우 종전 2~3인에서 5~7인으로 적격업체를 늘려서 선정하게 된다.

△**절수시설 설치대상 확대** = 현행 연면적 1백m²이상의 신축건물이나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절수형변기의 설치를 의무화했던 것을 모든 신축건물 및 주택에 설치도록 의무화하고 올 3월부터 시행한다.

△**소형주택 의무비율 변경** = 민간택지에 대한 소형주택의무비율이 폐지된다. 또한 서울의 직장·지역조합은 소형주택을 종전 18평이하 30%, 18~25.7평이하 70%씩 건설토록 했으나 앞으로 18평이하 20%, 18~25.7평이하는 재건축은 18평이하 30%, 18~25.7%이하 45%, 25.7평 초과시 25%씩 건설토록 했으나 앞으로 18평이하 29%, 18~25.7평 40%, 25.7평초과는 40%씩으로 변경된다.

△**공공기관 재건축 사업 참여** = 종전까지 재건축사업은 등록업자만 할 수 있었으나 새해부터는 지자체나 주공, 지방공사 등도 재건축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재건축 안전진단기관 선정방식 개선** = 종전까지는 조합이 임의로 안전진단을 지정했으나 내년부터는 시장, 구청장, 군수가 안전진단기관을 지정하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불교위험 있는 주택의 재건축을 입주민들이 시행했으나 앞으로는 시장 군수가 직접 재건축하거나 주공이나 지방공사도 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과 관련한 저당권을 말소해야 사업승인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를 말소하지 않아도 사업 승인이 가능하다.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변경 즉시 처리** = 앞으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변경은 사유발생이후

신청하면 즉시 처리된다. 지금까지는 건축물소유권이 변경되어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변경을 하려면 7일간이나 소요되었고 두 번이상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했으나 올해 1월 초부터는 한번 방문으로 즉시 처리된다. 또한 건축신고만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된다.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는 규모가 종전에는 85m²였으나 올해부터는 1백m²로 상향조정됐다.

세 금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벤처기업 전용단지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하는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허용.

△ 세제지원대상 범위확대 = 폐기물 재생처리신고업자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 어민들의 협업적 조직인 영어조합법인.

△ 영유아 보육비용에 대한 교육비공제 = 영유아를 위해 지출한 보육비용의 교육비공제를 1인당 70만원까지 허용.

△ 조세감면혜택을 받는 근로자 주식저축가입한도 및 적용기간 확대 = 가입한도를 종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리고 적용시한도 98년말까지로 연장. 추가연장여부도 검토.

△ 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의 세무처리기준 마련 = 사용자 보험료 및 신탁부금 불입때는 사용자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종업원이 퇴직으로 보험금 및 신탁금을 받을 때는 퇴직소득으로 간주.

△ 손비인정 접대비한도 축소 = 종전 기초금액을 2천4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중소기업의 경우 1천8백만원)으로 축소.

△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 = 소액주주가 3년이상 보유한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10%를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종결.

△ 과다차입억제제도 도입 = 2002년부터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비부인제도 신설.

△ 채무보증의제제도 도입 = 채무보증과 관련된 대손총당금 및 대손금에 대한 손비부인.

△ 기부금 손비인정한도 축소 = 종전 소득액의 7%에서 5%로 축소.

△ 기밀비 한도 축소 = 종전 한도액(자기자본 1%+ 수입금액의 0.035%)과 접대비총액한도의

20%중 적은 금액을 선택.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 상향조정**= 서울시의 경우 75%에서 80%, 광역시는 60%, 군지역은 40%에서 50%로 각각 조정.

△**구상채권항목 총당금 설정대상 확대**= 지역신용보증조합을 추가

△**은행의 대손총당금 설정한도 확대**= 종전기준 또는 금융기관 감독규정상의 표준비율.

△**자산평가등으로 인한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제도 신설**= 토지는 매각시 과세하고 건축물은 감가상각비와 상계.

△**전환사채이의에 대한 증여의제 확대**= 전환사채외에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교환사채를 과세대상에 추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지원**=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일반법인이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사무용부동산을 99년말까지 매각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따라 사업용부동산을 99년말까지 양도하고 자구계획에 정한 바에 따라 양도대금을 사용할 경우에도 특별부과세를 면제.

△**특소세면제**= 피아노등 보육시설의 보육용품과 카지노에 외국인이 입장하는 경우 비과세.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비과세**=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비상장 주식을 제외한 상장주식과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법인의 주식양도차익 과세**= 부동산이 전체자산의 50%이상인 법인의 주식에 대해 양도차익 과세.

△**기본관세율 개정**= 천연고무 양모등 기초원자재와 메탄올등 중간재 1백82개품목에 대해 할당관세율을 신규운용.

금융제도

△**신용정보업 진입요건 완화**= 신용정보업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을 일정요건(자본금 인력요건등)을 갖추면 설립이 가능.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그동안 개별법에 의해 영위해오던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나의 회사로 통합설립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제도를 신설.

산업정책

-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지원**= 단지조성비 지원조건을 연리 5.0%,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완화. 입주기업체 운전자금 상환기간을 3년이내에서 4년 이내로 연장. 제조업체만 허용하던 농공단지에 지역 특화업종 물류업 폐기물재생처리업체 추가. 지원시설구역 면적 하한선 폐지.
- △**수도권에서 공장이전 절차 간소화**= 이전지역에서 승인신청만으로 가능.
-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등록변경절차 간소화**= 입주계약 변경만으로 입주계약 및 등록변경을 처리.
- △**수입전기용품의 표시**= 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법에 의해 표시기준을 일원화.

노동

- △**고용보험 적용**=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대상은 「상용 10인(현행30인) 이상」, 고용안전 및 능력 개발사업 적용대상은 「상용 50인(현행 70인) 이상」으로 확대.
- △**휴업수당 지급**= 고용조정 지정업종의 기업이 휴업할 경우에만 향후 6개월간 휴업수당의 3분의 1 또는 2분의1(대기업 중소기업순 이하동일)을 지급하던 것을 비지정업종기업이 휴업할 경우에도 수당의 5분의1 또는 4분의 1 지급.
- △**직업전환훈련 지원금**= 업종 구분없이 전환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훈련비 전액과 훈련기간중 임금의 3분의 1지급.
- △**조기 재취직수당**= 구직급여 수급기간(30~2백10일)을 2분의1(현행3분의 1)을 일시불로 지급.
-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신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이 감원대신 훈련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훈련비 전액과 훈련기간중 임금의 3분의1 또는 2분의 1지급.
- △**근로자 사외파견 지원금(신설)**= 감원대신 자회사 협력회사 등에 근로자를 파견할 경우 향후 6개월간 파견근로자에 지급된 임금의 5분의 1 또는 4분의 1 지원.
- △**장기실직자 채용 장려금(신설)**= 1년 이상 실직자 또는 55세 이상 고령자로 실직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실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향후 6개월간 지급 임금의 4분의 1또는 3

분의 1 지원.

△**기능대 졸업자 학위부여 (신설)** =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 과정졸업생에게 전문학사와 동등한 산업학사 학위 부여.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인상** = 장애인 고용률이 기준고용률(상용근로자의 2%)에 미달한 사업주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미달 장애인 1인당 현행 월 19만원에서 20만2천원으로 인상.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제도(신설)** =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퇴직후 생계지원을 위해 공제조합에서 근속일수에 따른 퇴직공제금 지급.

△**산재보험 적용확대** = 현장실습중인 학생, 직업훈련생과 해외 파견근로자들도 산재보험 적용.

환경

△**연료사용 규제지역 확대** = 저황중유 의무사용지역 확대. 1.0% 이하 저황중유는 전국으로, 0.5%이하 저황중유는 40개도시로, 업무용 보일러 광주 울산 등 31개 지역.

△**과징금 상향 및 부과금기준 조정** = 과징금 처분대상에 제조업의 배출시설을 추가하고 과징금을 3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

△**대기오염물질 확대지정** = 대기오염물질을 47종에서 53종으로 확대 지정하고 아울러 특정 대기 오염 물질도 16종에서 25종으로 확대지정.

△**제작차 및 운행차 배출허용기준강화** = 지프형 및 8인승이하 승합차를 승용차로 분류, 기준을 강화.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소형화물자동차는 35%에서 30%로, 시내버스는 30%에서 25%로 각각 매연기준을 강화.

△**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 = 소형화물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현행 4만km에서 6만km로 연장.

△**음식물쓰레기 보증기간** = 급식인원 1백명 이상, 1백m²이상, 기타 대규모점포, 농수산물도매 시장에 대해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사업장으로 지정.

중소기업

△**중소기업 범위** = 건설업은 상시 근로자수 3백이하. 건물종합건설업 및 토목건설업은 각각

4백인이하. 관광호텔업 및 병원은 각각 2백이하.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 = 공정거래법상 30대 대규모기업집단계열사는 모두 중소기업에서 제외.

△중소기업의 판로안정지원 = 중소기업품 구매계획을 작성해야하는 공공기관 범위에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를 출자한 법인을 추가.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한도를 적립기금의 5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 중소기업의 품질인증마크 획득제품에 대한 각종 지원 활성화.

교 통

△자가용 승용차 최초 정기검사연장 = 새해 상반기중부터 자가용승용차의 최초 정기검사 주기가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또 승합차나 화물차 등 중·대형자동차는 현재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거마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던 것이 차령 5년까지 1년에 1차례만 검사.

△국내선 항공요금 인상 = 새해 1월15일부터 국내선 항공요금이 18.2(아시아나)~19.0%(대한항공) 상향 조정. 이에 따라 서울 제주간 요금은 대한항공의 경우 5만9천1백원으로, 아시아나항공은 4만9천9백원에서 5만9천1백원으로 각각 인상.

△사업용 자동차 구조기준 개편 = 새해 1월말부터는 시내버스의 승강구를 승객편의를 돋기 위해 2개이상 설치해야 하고 시외버스는 불필요한 정차 신호음 장치설치부과 의무면제.

자원 · 에너지

△최저에너지소비효율 기준제도 = 최저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생산 및 판매금지 명령.

△에너지가격예시제 도입 =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에 에너지가격 예시제를 포함.

△안전검사면제 = 검사시설 및 인력을 보유하고 보험에 가입할 경우 해당검사 면제.

△석유수출입 = 석유수출업자가 석유수출 때 대한석유협회의 추천폐지.

증 권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개인의 출자관계를 포함한 실질적 지배관계가 있는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결합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 된다.

△**외화증권 발행한도 폐지**= 해외전환사채(CB)나 주식예탁증서(DR),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외화증권 발행한도가 폐지돼 기업이 자유롭게 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기업인수합병 활성화(M&A)**= 내년 1월중 특정기업의 주식을 25% 이상 취득할 경우 「50%+1주」 까지 의무공개매수를 하도록 한 조항이 개정돼 「40%+1주」 까지만 공개매수를 하면 된다.

△**근로자 주식저축한도 확대 및 저축가능기간 연장**= 근로자 주식저축의 한도가 연간 총 급여액의 30%나 1천만원까지였으나 2천만원까지로 확대된다. 또 저축기간도 1년간 연장해 98년말까지로 변경했다.

△**코스닥기업의 주식분산요건 및 거래량 요건 강화**=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10%(벤처기업은 5%)이상으로 돼있는 주식분산비율이 20%이상으로 높아진다. 또 코스닥기업은 50인(벤처기업 25인)이상의 소액주주에게 지분이 분산돼 있어야 했으나 이 기준도 1백인 이상으로 높아진다. 거래량도 한달에 1백주이상이면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되지 않았지만 98년부터는 한달에 1천주 이상이 거래돼야 한다.

△**코스닥 등록취소 유예기간 단축**= 거래부진사유가 6개월간 지속되거나 총 투자유의 종목 지정월수가 12개월을 넘으면 코스닥 등록이 취소된다.

△**주식액면분할 및 중간배당 허용**= 주식 최저액면가를 현행 5천원에서 1백원으로 낮춰 분할할 수 있고 연 1회로 정해진 중간배당도 1회에 한해 추가 배당허용.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폐지**= 지난 92년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주식시장을 개방한 이래 97년 까지 55%가 개방됐으며 98년중 투자한도 자체가 폐지돼 1백% 개방예정.

△**채권시장 완전개방**= 97년말 채권종목별 개인 및 전체 투자한도를 폐지해 채권시장도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완전개방.

△**외국증권사 협지법인 설립허용**= 98년 3월에 외국계증권사의 국내 협지법인설립을 허용하며 국내증권사지분중 50%이상을 내국인이 소유해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해 외국인의 증권사 소유를 허용.

△**단기금융상품시장 개방일정 제시** = 기업어음(CP)양도성예금증서(CD)등 단기금융 상품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를 허용하기 위해 98년 1월까지 시장개방일정을 수립.

△**지역개발공채 등록발행** = 소액국공채의 무권화계획에 따라 각 시·도가 별행하는 모든 지역개발공채를 증권예탁원에 장부상 일괄등록해 발행. 또 오후 4시30분에서 5시까지 30분동안 이뤄지던 소액국공채의 신고매매시간을 6시까지 1시간 연장.

△**배당락기준가 산정방법 개선** = 주가가 액면가(5천원)미만으로 떨어진 종목에 한해 연말종가에 전년도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배당금액으로 삼아 배당기준가를 산정. 또 무배당이 예상되는 종목은 증권거래소가 자체 확인해 배당락조치.

△ **외화환산 회계처리기준 변경** = 외화환산손실을 기본조정계정인 외화환산치에서 이연자산인 환율조정자로 계상.

△**공모주 배정비율 축소** = 공모주 배정시 일반투자자들에 대한 배정비율이 40%에서 20%로 축소되며 장기적으로는 일반배정분이 모두 없어질 예정.

△**벤처기업 전용시장 개설** = 증권업협회 중개시장을 벤처기업부 일반기업부 외국기업부로 구분, 벤처기업들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하며 외국인들의 투자를 허용.

보험

△**자동차 보험료를 자유화** = 현행 범위요율제를 폐지, 내년 8월1일부터 자동차보험료율을 보험사가 자율 결정하도록 완전 자유화.

△**대외 개방 확대** = 98년4월부터 보험중개업이 외국인에게 개방되며 외국의 손해사정 및 보험계리업체의 국내 영업을 허용.

△**보험중개업 손해사정업 보험계리업 개방** = 4월1일부터 외국인도 영위가능.

△**보험중개인제도 개선** = 4월1일부터 생명보험에도 중개인제도 허용.

△**퇴직보험제도 도입** = 종업원의 퇴직후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신설.

농림

△**직접지불제 지원조건 완화** = 지급대상 연령이 65세에서 60(건강장애 및 노동력 부족의 경

우)로 하향조정되고 영농경력 요건도 신청전 3년간 쌀농사에 종사한지에서 1년간 종사자로 완화. 보조단가도 ha당 2백58만원에서 2백68만원으로 증액.

△**상수원 보호구역 중심으로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실시** = 경기 광주, 강원 춘천, 전북 무주, 전남 화순, 경북 안동 등 대상지역에 1백억원을 투입,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농업지구 조성.

△**채소류 출하예약제** = 배추 상추 시금치 등 가격진폭이 크고 단일 출하물량이 많은 60개 품목을 대상으로 예약제 실시.

△**민간유기농법에 대한 국가 검증사업 실시** = 우렁이농업 키토산농업 활성탄 및 목초액 등 16개 민간유기농법을 대상으로 검증사업 실시.

△**농기계 수리사와 농기계운전요원 병역특례자 지원확대** = 병역특례자 배정인원을 4백39명으로 확대.

해 양 수 산

△**수산특산물 품질인증 수수료** = 신청서 1건당 3만원상당의 수입인지 첨부. 2건이상의 신청 시 추가 1건마다 1만5천원 수입인지 첨부.

△**수산물 기본관세율 변경** = 김냉동망 59%에서 10%로, 굴 치폐 20%에서 5%로.

△**영어자금상환유예(신설)** = 국가의 정책 등으로 부득이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1년이내에 영어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정 보 통 신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주식소유 한도 확대** = 유선전화회사 주식소유가 금지됐으나 33%(한국 통신은 20%) 까지 허용.

△**별정통신사업 허용** = 음성회선 재판매 인터넷전화 구내통신사업등의 별정통신사업 제도를 도입, 신청을 받아 요건에 맞으면 허용. 단 외국인은 99년부터 참여 가능.

△**전파사용료 인하** = 이동전화와 개인휴대통신(PCS)은 분기당 5천원, 주파수공용통신(TRS)은 3천원으로 인하하고 시티폰과 이동 공중무선전화는 면제. 공용화기지국에 대해서는 5

0~67% 감면.

△**전화세**=시내 시외 국제 시티폰 공중전화등을 제외한 모든 통신 서비스에 대한 전화세가 부가가치세로 전환.

△**통신서비스요금 인가**=한국통신의 시내전화와 SK텔레콤의 이동전화요금을 제외한 모든 통신요금이 신고제로 변경돼 한통은 시외와 국제전화요금을, SK텔레콤은 무선호출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

시민행정

△**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 완전개통**=현재 부분별로 개통돼 있는 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중 하월곡동~홍은동 구간 10.1km가 12월중 개통돼 동심을 거치자 않고 우회할 수 있게 됨. 4월중에는 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중 하월곡동~마장교간 3.5km가 개통될 예정.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세 감면**=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 이외에 배우자 등 가족 명의차량 1대에 한해 자동차세가 감면되고 국가유공자들도 자동차세 감면.

보건복지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횟수 완화**=연1회로 줄이고 진단항목중 소화기계 전염병은 장티푸스만 받도록 완화.

△**무작위 표본검사 항목 확대**=관광호텔 등에서 수입해 쓰는 외화 획등용 식품 포함.

△**의료보험 연간 요양급여 기간 확대**=현행 2백70일에서 30일 추가 3백일로 확대.

△**보험급여 범위 확대**=목발·휠체어·회지팡이 등 장애인보장구까지 범위 확대.

△**국민연금보험료 인상**=표준보수액의 6%에서 9%로 인상.

△**국민연금 적용대상 확대**=5인미만 사업자근로자와 도시자영자를 국민연금 당연 적용 대상으로 확대(7월).

△**규격화 확대 실시**=5백14종의 모든 한약재에 대해 통관전 품질검사 강화,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골자로 규격화 확대 실시(2월).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수준 향상**=최저생계비의 90%수준에서 1백%로 향상.

△**취학전 무상보육 실시**=보육시설에서 취학직전 1년 유아의 무상보육을 농·어촌지역부터 실시.

△**요보호 여성 상담전화 설치**=각 시·도청 소재지와 보령·여수·포항에 요보호여성 상담 전화 국번없이 1366번 설치.

△**경로연금 지급**=생활보호대상노인과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경로 연금 지급(7월).

병 무

△**대학생 복학시기 맞춰 입영**=10월 말까지 재학생 입영원을 출원하는 학생은 본인이 원하는 달에 입영할 수 있으며 특히 전역후 바로 복학이 가능한 입영시기인 12~1월과 6~7월에 입영을 희망하는 학생들 우선 반영.

△**카투사, 토익 6백점이상 지원자중 추첨**=카투사(KATUSA·주한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선발 방식이 성적순 선발에서 토익 성적 6백점 이상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전환.

△**고학력자 등 산업기능요건 편입제한**=군의 첨단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고학력 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대학원학력자(입학자 포함)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제한. 또 대학학력자(입학자)는 각 병역지정업체별로 배정된 현역 대상인원의 50%범위 내에서만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가능.

△**공익근무요원 소집순서조정**=소집대기 기간이 길고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복무할 수 있도록 정병검사 연도가 빠르고 연령이 많은 순으로 소집되며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으로 2년이상 대기한 사람은 지방병무청에 우선 소집원을 출원.

법 원·법 무

△**법원의 소액심판 대상범위 확대**=일선 법원과 시·군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소액사건의 범위가 소송물가액 1천만원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확대.

△**특허법원 신설**=서울에 특허법원이 신설돼 특허관련 소송을 낼 사람은 특허심판원의 심

판결차를 거쳐 대법원에서 소송을 내기전에 특허법원에 한차례 더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행정법원 신설**=서울과 부산등 전국12개 지방법원에 행정법원이 신설돼 행정소송이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등 3심 절차로 바뀐다. 다만 조세관련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기전에 국세심판소의 심판절차를 먼저 밟아야 함.

△**호적서 이혼경력 삭제 가능**=이혼이나 입양 경력 등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이 호적에 올라 있는 사람은 내년부터 본적을 옮기는 전적(轉籍)절차를 통해 이같은 경력을 호적에서 삭제 가능.

△**개정 국적법 시행**=부친이 외국인인 자도 모친이 한국인이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종전에는 남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면 그 처도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고 또한 처의 단독귀화가 금지됐으나 내년부터 결혼한 외국인 여성도 독자적으로 국적을 선택.

△**행정소송 3심제 시행**=종전에는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행정심판절차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으며 신설되는 행정법원(지방은 본원)이 1심을 관할하는 3심제시행.